

FHV 장애인 우대 규칙 시행

Meera Joshi
위원의장

Allan J. Fromberg
공보부

frombera@tlc.nyc.gov

Rebecca Harshbarger
공보부

harshbargerR@tlc.nyc.gov

33 Beaver Street
22nd Floor
New York, NY 10004

2018년 10월 3일,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axi and Limousine Commission)는 임대 차량 기지를 대상으로 한 휠체어 이용 가능 요건을 수정하는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기지에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해 휠체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무 운행은 연간 운행 중 최소 5%를 휠체어 우선 차량(WAV)으로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허가받은 휠체어용 호출 서비스(다른 기지를 대신해 휠체어 이용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TLC 면허 소지 회사)와 연결된 기지를 허용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4일부터 모든 임대 차량 기지는 의무 운행이나 예외 사항을 통해 휠체어 이용 가능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 차량 기지에서 휠체어 이용 가능 운행을 예약하고자 하는 승객은 지역 자동차 서비스에 전화하거나 Uber와 Lyft 같은 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LC 면허 소지 차량 서비스가 휠체어 이용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은 311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규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TL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yc.gov/html/tlc/html/industry/fhv_accessibility.shtml